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856(본소), 2020가단5228970(반소)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 약정금]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36105(본소), 2021나36112(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856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관주

변론종결 2021. 4. 6.

판결선고 2021. 5.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06,168,35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31,3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2017. 12. 18. 주식회사 C이 발주한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12. 18. ~ 2019. 9. 20., 계약금액 54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원도급공사’라고 한다)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원도급공사와 동일한 기간, 계약금액 53억 1,366만 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0. 31.경 아래 사항에 합의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를 인수인계하였다.

1. 상기 공사현장의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원고가 2018.10.31. 부로 피고에게 이전한다.
2. 상기현장의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자재비 및 인건비 등 공사비는 피고에게 승계함에 동

의한다.

3. 상기현장의 임시전력 공사업체인 원고는 잔여공사에 대하여 피고로 위임키로 하고 계약 변경에 동의한다.

4. 상기현장의 원고 직원 숙소 임대차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 및 위임함에 동의한다.

라. 원고는 2019.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물품대금 22,174,502원, (2) 노무비 매출계산서 발행분 환급금액 28,314,232원, (3) 미기성 청구금 55,679,624원, 합계 106,168,358원이 정산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6,168,358원의 정산금 지급을 구한다는 통고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G 물품대금 22,174,502원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제2항에 따라 G에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G이 원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G에 2018. 9. 12. 5만 원, 2019. 9. 3. 1,000만 원, 2019. 9. 5. 11,607,942원, 2019. 9. 20. 516,560원, 합계 22,174,502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명령의 자재대금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무관한 것이라고 다툰다.

2)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이 원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원고의 자재대금에 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5. 29.자로 '20,607,4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G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자재대금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인 2016. 1. 30.부터 2018. 7. 31.까지 원고에 공급한 자재에 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자재대금 중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자재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전기공사 자재대금을 원고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고 확인한다(을 제8호증의 1)].

원고가 2019. 9. 2.(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2019. 9. 3.’은 오기로 보인다), 같은 달 5일 및 20일 각 지급한 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지급명령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된 자재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서는 공사가 시작된 지 약 10개월이 지나 작성되었고 여기에 그때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기성금 등의 처리나 그밖에 정산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가 통고서를 보낸 2019. 10. 16.에 이르기까지 약 1년간 원고나 피고가 상대방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주장한 적도 없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협약은 협약서 작성 무렵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그 남은 상태대로 원피고가 인수인계하고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정산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바, 제2항에서 피고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한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 역시 협약서 작성 시까지 지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 채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원고가 2018. 9. 12. 지급한 5만 원은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당시 이미 지급되어 채무가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노무비 매출계산서 발행분 환급금액 28,314,232원

1) 원고는, 피고가 일용직 노무비 합계 304,019,656원과 그 4대 보험금 합계 24,507,464원을 피고의 명의로 지급한 후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이 돈을 공제하였는데, 원고가 일용직 노무비에 관한 283,142,32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28,314,232원 상당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을 매입자료로 처리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장에 필요한 모든 인원은 원고의 주도하에 투입하고 관리하지만 노무비 등은 피고의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것이고, 피고가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약속한 적 없다고 다툰다.

2)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28,314,232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돈에 관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미기성 청구금 55,679,624원

1) 원고는, 피고가 2018. 9. 27.까지 F로부터 기성금 6억 2,920만 원(= 공급가액 5억 7,200만 원 + 부가가치세 5,720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수수료(면허대여료) 1,716만 원, 노임 20,032,680원, 직불 자재대금 8,361,132원을 제외한 583,646,188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때까지 524,247,2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9,398,8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중 55,679,624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1.까지 F로부터 받은 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억 7,200만 원인데,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한 524,247,29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한편 이 사건 협약서 제2항에 따라 그때까지 원고가 미지급한 공사비 등 합계 205,098,758원을 피고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다툰다.

2) 2018. 10. 1.경까지 F이 피고에게 피고가 자인하는 부가가치세 포함 5억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자인하는 5억 7,200만 원에서 원고가 인정하는 수수료, 노임, 직불 자재대금을 제외하면 526,448,188원(피고는 위 돈 중 1,872,180원은 원고의 근로자에 의하여 가압류된 상태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제외하면 524,574,008원)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이 금액이 그때까지 원고가 청구하여 피고가 지급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524,247,290원에 근접한데다가, 위 가.의 3)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은 협약서 작성 무렵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그 남은 상태대로 원피고가 인도인수하고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정산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바, 협약서에 별도로 그 지급에 관한 기재가 없는 이상 협약 체결 이후로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지급할 기성금이 남아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협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도 기존에 발생한 원고의 자재대금 등 채무까지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31,366,000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여 위약벌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벌 531,36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포기한 적 없고, 을 제7호증은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4조, 정보통신사업법 제25조, 제31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호, 제22조에 위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 단

원고와 피고가 2018. 10. 31.경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인수인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래 피고가 2020. 9. 1.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기까지 약 2년이 지나도록 계약보증금에 관한 주장을 한 적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1호증의 기재나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의 일부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에 관하여는 지급각서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사실(제9항),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2. 18.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보증금액(531,366,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급각서(을 제7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지급각서의 ‘계약보증금’이 ‘위약벌’이라고 볼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각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